

국 토 교 통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천습지 복원비 설계반영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내 용

경상남도(○○과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9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06. 3. 14. ○○○○시 ○구 ○○○가 ○○○번지에 있는 ○○○○(주) (대표자 ○○○)와 4개사¹⁰³⁾와 ‘한림-생림간 국지도 도로건설공사’를 총공사부기금액 252,021,000,000원¹⁰⁴⁾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3. 15. 착공하여 2017. 12. 31.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, ○○천습지 복원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

‘○○-○○간 도로건설공사’ 건설 사업의 「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」¹⁰⁵⁾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은 지원대상 도로의 건설사업비 중 시설비를

103) ○○○○시 ○○동 ○○○-○○에 있는 ○○○○○○(주) 대표자 ○○○, ○○ ○○시 ○○동 ○-○○에 있는 ○○○○(주) 대표자 ○○○, ○○ ○○시 ○○동 ○○○-○에 있는 ○○○○(주) 대표자 ○○○, ○○ ○○시 ○○동 ○○○-○에 있는 ○○○○(주) 대표자 ○○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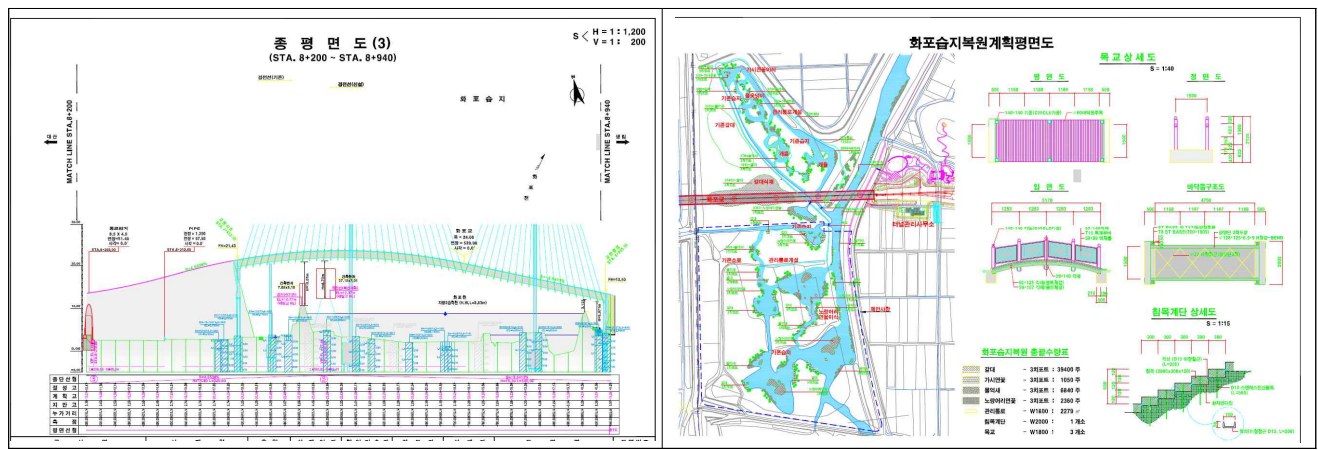
104) 2016. 3. 23. 총공사부기금액이 14,887,712,000원으로 변경계약함

105) ‘국가지원지방도 건설’ 사업 교부 결정 공문 통보(○○○○관-○○○○, ○○○○. ○. ○○, ○○○○관-○○○○,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)

국고에서 90%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

한편 위 공사구간 내에 하천폭 400m의 지방하천인 ○○천이 지나가고 있어 측점 8+413부터 8+933까지 연장 520m의 ○○교를 [그림]과 같이 설치하여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.

[그림] “○○천 교량설치 현황”



*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그런데 경상남도(○○과)에서는 ‘○○-○○간 국지도 도로건설공사’의 측점 8+413부터 8+933까지 연장 520m ○○교를 설계하면서, ○○교 교대와 가도 등이 지방하천인 ○○천 구역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○○천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○○천습지 복원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 [표]와 같이 ○○천습지(면적 77,000㎡)의 복원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사비 233,694,000원 상당이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.

[표] “○○천습지 복원비 반영 현황”

(단위 : ㎡, 천원)

발주청	공 사 명	복원면적 (㎡)	○○천습지복원비			비고
			계	직접공사비	제경비	
경상남도	○○-○○간 도로건설공사	77,000	233,694	131,381	102,313	

*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

위 공사에 교부 목적과 다르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○○천습지 복원비 233,694,000원
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